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99호 2009. 8. 5. (수)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09-95호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고시..... 1
- 정선군고시 제2009-102호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고시..... 2
- 정선군고시 제2009-103호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고시..... 12
- 정선군고시 제2009-104호 200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조정 고시.....14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09-488호 분묘개장공고(1차)..... 17
- 정선군공고 제2009-491호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입법예고..... 19
- 정선군공고 제2009-502호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4
- 정선군공고 제2009-508호 하천편입토지공고..... 28
- 정선군공고 제2009-510호 765kV 신태백-신가평송전선로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 33
- 정선군공고 제2009-515호 무연고 사망자 공고..... 34
- 정선군공고 제2009-516호 정선군하늘터 가동중지 알림..... 35
- 정선군공고 제2009-517호 정선군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안) 행정예고..... 36
- 정선군공고 제2009-518호 지방세 체납자 공매예고 공시송달..... 39
- 정선군공고 제2009-519호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40
- 정선군공고 제2009-521호 정선(남면)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 입안·열람공고..... 41
- 정선군공고 제2009-522호 정선(사북)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42
- 정선군공고 제2009-523호 지방세 체납자 공매예고 공시송달..... 43
- 정선군공고 제2009-524호 재산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44

정선군고시 제2009-95호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고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개별주택가격 산정과정에서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결정·고시 합니다

2009. 7. 14.

정 선 군 수

1. 개별주택가격의 정정 결정·고시

- 가. 고시(가격)기준일 : 2009년 1월 1일
 나. 정정대상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73-4번지
 다. 고시사항 : 개별주택가격(토지, 건물 일체)
 라. 고시방법 : 고시문 게시

2. 이의신청방법

정정 결정·고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09. 8. 14.까지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사항

의문사항에 대하여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과표팀(☎ 033. 560-21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고시 내역(정선군)

(단위 : 원)

년 도 기준일	법정리	지번	지 목	당초 결정가격			주요정정 내 용	정 정 결정고시가격	비고 (지리적 위치)
				산정 가격	검증 가격	결정 가격			
2009.1.1 기준	사북리	373-4 (제9동)	대	62,749,900	11,828,354	9,460,000	산정과정의 위산, 오기 (전산오류)	50,100,000	사북 시장 내

정선군고시 제2009-102호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고시

2008회계연도 정선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지방자치법 제 125조 및 제13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의회로부터 승인 받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7. .

정 선 군 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

1. 결산개황

(단위:원)

회계별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잉여금 ㉠-㉢
합 계	386,118,720,353	385,124,058,167	299,949,554,205	85,174,503,962
일반회계	348,803,858,543	347,952,738,988	270,028,689,635	77,924,049,353
특별회계	37,314,861,810	37,171,319,179	29,920,864,570	7,250,454,609
상수도사업	13,646,450,800	13,431,491,406	11,102,455,470	2,329,035,936
기타특별회계	23,668,411,010	23,739,827,773	18,818,409,100	4,921,418,673
수질개선	19,571,729,060	20,131,931,755	17,546,048,070	2,585,883,685
의료급여기금	611,019,000	589,879,630	571,616,120	18,263,510
주택사업	331,073,000	102,493,569	0	102,493,569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1,145,859,000	911,772,338	163,300,730	748,471,608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85,581,000	85,668,354	23,981,000	61,687,354
주차장	857,006,000	926,364,387	31,693,720	894,670,667
기반시설부담금	557,942,000	483,140,530	0	483,140,530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508,201,950	508,577,210	481,769,460	26,807,750

2. 세입·세출 결산 현황

가. 세입결산

(단위:원)

회계별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 납 액 ㉢	미수납액 ㉡-㉢
합 계	386,118,720,353	390,350,291,183	385,124,058,167	5,226,233,016
일반회계	348,803,858,543	352,197,312,978	347,952,738,988	4,244,573,990
특별회계	37,314,861,810	38,152,978,205	37,171,319,179	981,659,026
상수도사업	13,646,450,800	13,672,779,306	13,431,491,406	241,287,900
기타특별회계	23,668,411,010	24,480,198,899	23,739,827,773	740,371,126
수질개선	19,571,729,060	20,209,219,571	20,131,931,755	77,287,816
의료급여기금	611,019,000	589,879,630	589,879,630	0
주택사업	331,073,000	331,493,569	102,493,569	229,000,000
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	1,145,859,000	911,772,338	911,772,338	0
농공단지조성및 관리사업	85,581,000	85,668,354	85,668,354	0
주차장	857,006,000	1,259,590,297	926,364,387	333,225,910
기반시설부담금	557,942,000	583,997,930	483,140,530	100,857,400
장기미집행대지 보상	508,201,950	508,577,210	508,577,210	0

나. 세출결산

(단위:원)

회계별	예산액 ㉔	예산현액 ㉕	지출액 ㉖	이월액 ㉗	집행잔액 ㉕-㉖-㉗
합 계	317,153,184,000	386,118,720,353	299,949,554,205	57,988,205,090	28,180,961,058
일반회계	282,721,348,000	348,803,858,543	270,028,689,635	56,080,081,790	22,695,087,118
특별회계	34,431,836,000	37,314,861,810	29,920,864,570	1,908,123,300	5,485,873,940
상수도사업	12,501,706,000	13,646,450,800	11,102,455,470	591,357,720	1,952,637,610
기타특별회계	21,930,130,000	23,668,411,010	18,818,409,100	1,316,765,580	3,533,236,330
수질개선	17,837,637,000	19,571,729,060	17,546,048,070	1,290,446,090	735,234,900
의료급여기금	611,019,000	611,019,000	571,616,120	0	39,402,880
주택사업	331,073,000	331,073,000	0	0	331,073,000
정선군임대 아파트관리운영	1,145,859,000	1,145,859,000	163,300,730	0	982,558,270
농공단지조성 및관리사업	85,581,000	85,581,000	23,981,000	0	61,600,000
주차장	857,006,000	857,006,000	31,693,720	0	825,312,280
기반시설부담금	557,942,000	557,942,000	0	0	557,942,000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504,013,000	508,201,950	481,769,460	26,319,490	113,000

다. 기능별·성질별 현황

(1) 일반회계

(단위 : 원)

세 입			세 출		
구 분	결 산 액		구 분	결 산 액	
계	수납금액	비율	계	지출금액	비율
	347,952,738,988			270,028,689,635	
1. 지방세	30,499,808,620		1. 일반공공행정	28,257,088,585	
보통세	28,571,977,890		2. 공공질서및안전	8,775,213,480	
목적세	1,608,590,640		3. 문화및관광	12,389,024,820	
과년도수입	319,240,090		4. 환경보호	13,665,006,380	
2. 세외수입	102,301,546,968		5. 사회복지	35,637,566,011	
재산임대	515,547,338		6. 보건	3,573,368,365	
사용료	1,727,294,807		7. 농림해양수산	28,398,724,460	
수수료	723,746,730		8. 산업중소기업	3,685,471,780	
사업수입	7,905,299,129		9. 수송및교통	14,760,876,230	
징수교부금	340,642,670		10. 국토및지역개발	84,882,068,606	
이자수입	4,987,848,914		11. 예비비		
재산매각	460,094,660		12. 기타	36,004,280,918	
순세계잉여금	16,463,696,000		1. 인건비	29,969,857,154	
이월금	66,855,942,543		2. 물건비	14,503,035,294	
융자금	80,599,800		3. 이전경비	49,781,633,171	
부담금	36,244,280		4. 자본지출	166,837,533,166	
잡수입	1,692,774,917		5. 보전재원	600,000,000	
과년도수입	511,815,180		6. 내부거래	7,645,891,000	
3. 지방교부세	116,671,105,000		7. 예비비및기타	690,739,850	
4. 재정보전금	2,122,868,000				
5. 보조금	96,357,410,400				
국비보조금	72,505,689,000				
도비보조금	23,851,721,400				

(2)특별회계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비고
합 계		37,314,861,810	37,171,319,179	29,920,864,570	
상수도사업		13,646,450,800	13,431,491,406	11,102,455,470	
기타특별회계		23,668,411,010	23,739,827,773	18,818,409,100	
	수질개선	19,571,729,060	20,131,931,755	17,546,048,070	
	의료급여기금	611,019,000	589,879,630	571,616,120	
	주택사업	331,073,000	102,493,569	0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1,145,859,000	911,772,338	163,300,730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85,581,000	85,668,354	23,981,000	
	주차장	857,006,000	926,364,387	31,693,720	
	기반시설부담금	557,942,000	483,140,530	0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508,201,950	508,577,210	481,769,460	

3. 군민 부담 상황

가. 세목별 군세 징수현황

(단위:원)

세목별	징수목표액 ㉠	부과액 ㉡	징수액 ㉢	불납결손액 ㉣	미 수 액 ㉡-(㉢+㉣)
계	29,605,000,000	31,710,160,640	30,499,808,620	184,763,050	1,025,588,970
주민세	16,500,000,000	16,826,924,810	16,696,005,150	2,208,170	128,711,490
재산세	3,300,000,000	3,526,930,040	3,365,907,820	15,259,080	145,763,140
자동차세	1,650,000,000	2,307,185,980	2,025,501,690	4,599,520	277,084,770
도축세	55,000,000	70,468,000	70,468,000	0	0
담배소비세	4,350,000,000	4,495,032,540	4,495,032,540	0	0
주행세	2,000,000,000	1,919,049,740	1,919,049,740	0	0
종합토지세	0	24,390	12,950	5,000	6,440
도시계획세	600,000,000	683,585,450	632,449,210	5,154,260	45,981,980
사업소세	900,000,000	980,499,810	976,141,430	875,480	3,482,900
과년도수입	250,000,000	900,459,880	319,240,090	156,661,540	424,558,250

나. 군세 부담액 현황

(단위:원,명,세대)

군민1인당 부 담 액	세대당 부담액	인구수 및 세대수		비고
		인구수	세대수	
734,033	1,667,385	41,551	18,292	

4. 채권 운용 상황

(단위:원)

회계별	전년도말 ㉠	2008년 운용상황		2008년도말 ㉠+㉡-㉢
		발생액㉡	소멸액㉢	
계	2,128,429,968	801,500,000	422,313,300	2,507,616,668
일반회계	1,267,531,400	801,500,000	50,000,000	2,019,031,400
특별회계	684,902,416	0	357,413,300	327,489,116
기 금	175,996,152	0	14,900,000	161,096,152

5. 채무 운용 상황

(단위:원)

회계별	전년도말 ㉠	2008년 운용상황		2008년도말 ㉠+㉡-㉢
		발생액㉡	소멸액㉢	
계	12,947,078,208	7,524,417,660	7,439,136,559	13,032,359,309
일반회계	12,500,000,000	0	600,000,000	11,900,000,000
세입세출외현금	447,078,208	7,524,417,660	6,839,136,559	1,132,359,309

6. 기금 운용 상황

(단위: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
		계	수납액	지출액	
합 계	18,946,348,002	6,952,693,771	7,166,531,671	213,837,900	25,899,041,773
청사건립기금	9,113,291,457	5,654,563,816	5,654,563,816		14,767,855,273
사회복지기금	3,628,027,426	83,909,217	193,669,217	109,760,000	3,711,936,643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46,068,562	33,444,240	46,444,240	13,000,000	179,512,802
농업농촌발전안전기금	5,080,305,260	1,000,205,850	1,000,205,850		6,080,511,110
재난관리기금	860,228,769	173,443,530	260,169,430	86,725,900	1,033,672,299
식품진흥기금	118,426,528	7,127,118	11,479,118	4,352,000	125,553,646

7. 공유재산 상황

가. 공유재산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	2008년도 증감액		2008년말 현 재 액 ㉠+㉡-㉢
			증㉡	감㉢	
계		533,507,641	67,539,188	100,433,664	500,613,165
행정 재산	소 계	278,488,651	36,562,400	188,816	314,862,235
	공공용재산	115,321,447	25,073,835	79,378	140,315,904
	공용 재산	160,698,852	8,241,132	64,172	168,875,812
	기업용재산	2,468,352	3,247,433	45,266	5,670,519
보 존 재 산		10,494			10,494
잡 종 재 산		255,008,496	30,976,788	100,244,848	185,740,436

나. 물 품

(단위:개, 천원)

정수	전년도말현재액 ㉠		2008년도 증감액				2008년말 현재액 ㉠+㉡-㉢	
	건수	금액	취득㉡		처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3	268	3,018,347	17	217,337	36	235,991	249	2,999,693

※ 대상물품 : 33개 정수물품[2008년도 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수급관리계획작성기준]

8. 공기업 운영현황(상수도사업)

가. 대차대조표

(단위 : 원)

과 목	금 액		증 감
	2008년도(당기)	2007년도(전기)	
1. 유동자산	2,591,714,286	4,152,167,592	△1,560,453,306
가. 당좌자산	2,578,400,456	4,133,643,092	△1,555,242,636
○ 현금예금	2,329,035,936	3,898,411,686	△1,569,375,750
○ 세입세출외현금	24,430,000	28,147,820	△3,717,820
○ 대손충당금(미수금)	218,183,840	187,268,790	30,915,050
○ 미수수익	6,750,680	19,814,796	△13,064,116
○ 선 금 급	0	0	0
나. 재고자산	13,313,830	18,524,500	△5,210,670
○ 저장품	13,313,830	18,524,500	△5,210,670
2. 고정자산	43,373,158,651	39,727,619,685	3,645,538,966
가. 투자자산	324,000	324,000	0
나. 가동설비자산	43,100,313,251	39,727,295,685	3,373,017,566
자 산 총 계	45,964,872,937	43,879,787,277	2,085,085,660
1. 유동부채	27,172,900	28,147,820	△974,920
가. 예수금	24,430,000	28,147,820	△3,717,820
나. 미지급비용	2,742,900	0	2,742,900
2. 고정부채	0	0	0
부 채 총 계	27,172,900	28,147,820	△974,920
1. 자본금	6,006,368,973	6,006,368,973	0
가. 원시자본금	6,006,368,973	6,006,368,973	0
2. 자본잉여금	40,737,598,275	37,960,925,705	2,776,672,570
가. 국고보조금	6,412,340,000	6,412,340,000	0
나. 도비보조금	1,309,694,000	1,309,694,000	0
다. 타회계보조금	26,272,360,800	23,772,360,800	2,500,000,000
라. 시설분담금	1,022,123,800	973,543,800	48,580,000
마. 원인자부담금	676,000,000	676,000,000	0
바. 재평가적립금	2,113,088,247	2,113,088,247	0
사. 기부금	2,931,991,428	2,703,898,858	228,092,570
3. 결손금	806,267,211	115,655,221	690,611,990
자 본 총 계	45,937,700,037	43,851,639,457	2,086,060,580

나. 손익계산서

(단위 : 원)

과 목	금 액		증 감
	2008년도(당기)	2007년도(전기)	
1. 영업수익	6,331,817,250	6,069,283,330	262,533,920
가. 급수수익	5,959,754,060	5,741,585,030	218,169,030
나. 급수공사수익	206,766,700	211,104,570	△4,337,870
다. 기타영업수익	165,296,490	116,593,730	48,702,760
2. 영업비용	7,699,515,264	7,796,157,492	△96,642,228
가. 원수및취수비	594,265,300	618,385,850	△24,120,550
나. 정수비	2,786,798,400	2,445,640,690	341,157,710
다. 배수비	815,895,170	1,399,690,550	△583,795,380
라. 일반관리비	1,007,927,860	1,005,345,570	2,582,290
마. 징수및수용가관리비	552,300,050	453,045,150	99,254,900
바. 급수공사비	228,092,570	211,957,100	16,135,470
사. 감가상각비	1,706,683,294	1,656,873,412	49,809,882
아. 대손상각비	6,552,620	4,292,970	2,259,650
자. 기타영업비용	1,000,000	926,200	73,800
3. 영업손실	1,367,698,014	1,726,874,162	△359,176,148
4. 영업외수익	677,086,024	1,611,218,941	△934,132,917
가. 이자수익	159,943,614	111,218,941	48,724,673
나. 타회계전입금수익	500,000,000	1,500,000,000	△1000,000,000
다. 기타영업외수익	17,142,410	0	17,142,410
5. 영업외비용	0	0	0
6. 경상손실	690,611,990	115,655,221	574,956,769
7. 특별이익	0	0	0
8. 특별손실	0	0	0
9. 당기순손실	690,611,990	115,655,221	574,956,769

정선군고시 제2009-103호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고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개별주택가격 정정사유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결정·고시 합니다.

2009. 7. 28.

정 선 군 수

1. 개별주택가격의 정정 결정·고시

가. 고시(가격)기준일 : 2005년 ~ 2009년 1월 1일

나. 정정대상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73외 15호

다. 고시사항 : 개별주택가격(토지, 건물 일체)

라. 고시방법 : 고시문 게시

2. 이의신청방법

정정 결정·고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09. 9. 28.까지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사항

의문사항에 대하여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과표팀(☎ 033. 560-21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고시 내역(정선군)

(단위: m², 천원)

심의 번호	기준 년도	주택소재지			결정가격	조정내용	정정가격 (조치내역)	부평위 심의가격	비고
		법정동	법정리	지번					
1	2009.1.1	정선읍	봉양리	1-73	9,980	철 거	공시취소	-	
2	"	정선읍	봉양리	291 (제2동)	10,900	철 거	공시취소	-	
3	"	정선읍	애산리	416-1	1,050	철 거	공시취소	-	
4	2005.1.1	사북읍	사북리	산153-1 (제7동)	1,510	사북리373-4번지로 지번정정	36,000	36,000	
5	2006.1.1	사북읍	사북리	산153-1 (제7동)	48,400	사북리373-4번지로 지번정정	42,300	42,300	
6	2007.1.1	사북읍	사북리	산153-1 (제7동)	52,700	사북리373-4번지로 지번정정	45,900	45,900	
7	2008.1.1	사북읍	사북리	산153-1 (제7동)	55,300	사북리373-4번지로 지번정정	84,400	84,400	
8	2009.1.1	신동읍	가사리	253	6,450	철 거	공시취소	-	
9	"	남 면	낙동리	369 (제1동)	3,980	낙동리369-2번지로 지번정정	4,250	4,250	
10	"	남 면	낙동리	369 (제2동)	2,920	낙동리369-2번지로 지번정정	3,110	3,110	
11	"	남 면	낙동리	369 (제3동)	2,620	낙동리369-2번지로 지번정정	2,800	2,800	
12	"	북평면	나전리	373	9,590	폐 가	공시취소	-	
13	2008.1.1	북평면	숙암리	432	11,000	철 거	공시취소	-	
14	2009.1.1	북평면	숙암리	432	10,400	철 거	공시취소	-	
15	"	여량면	유천리	563	5,220	유천리564번지로 지번정정	1,110	1,110	
16	"	임계면	고양리	461	2,850	이중등재	공시취소	-	

정선군고시 제2009-104호

200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조정 고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후 조정된 지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09. 7. 28.

정 선 군 수

□ 2009.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조정 고시

1. 고시(가격)기준일 : 2009년 1월 1일
2. 이의신청 조정필지 : 고한읍 고한리 232-1번지 외 42필지
3. 고시사항 : 개별필지 단위면적(m^2)당 가격(원)
4. 고시방법 : 고시문 게시 및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 기타사항

의문사항에 관하여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과표팀 (☎033-560-2301, 22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09.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조정 결정·고시 내역

(단위 : 원/㎡)

심의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전년지가	결정지가	이의 신청 요지	조정내용 (검증내용)	조정 결정·고시 가격	비 고
	법정동	법정리	지번								
1	고한읍	고한리	232-1	임	15,891	18,800	18,400	하향	하향조정	16,300	
2	고한읍	고한리	239-1	대	793	56,400	55,400	하향	하향조정	54,000	
3	고한읍	고한리	240	전	10,778	22,500	22,500	하향	하향조정	20,900	
4	고한읍	고한리	240-1	전	620	29,700	29,700	상향	상향조정	43,200	
5	고한읍	고한리	254-2	임	12,122	2,860	2,860	하향	하향조정	577	
6	고한읍	고한리	274-63	대	1,350	373,000	385,000	상향	상향조정	623,000	
7	고한읍	고한리	274-165	대	22	373,000	385,000	상향	상향조정	623,000	
8	고한읍	고한리	산44	임	63,471	544	532	하향	하향조정	492	
9	사북읍	사북리	356-41	대	153	1,700,000	1,700,000	하향	기 각	1,700,000	
10	사북읍	사북리	356-62	대	87	1,700,000	1,700,000	하향	기 각	1,700,000	
11	사북읍	사북리	356-65	대	83	958,000	966,000	하향	기 각	966,000	
12	신동읍	조동리	202-3	대	1,540	68,400	68,400	상향	기 각	68,400	
13	신동읍	조동리	231-1	대	587	18,500	18,500	하향	하향조정	8,510	
14	신동읍	조동리	490	전	2,522	1,090	1,000	하향	하향조정	435	
15	신동읍	조동리	491	전	2,955	1,090	1,000	하향	하향조정	435	
16	신동읍	방제리	155-5	전	9,463	4,740	4,650	상향	기 각	4,650	
17	신동읍	방제리	443-78	전	2,695	4,400	4,300	상향	기 각	4,300	
18	신동읍	방제리	443-81	전	374	4,400	4,300	상향	상향조정	4,920	
19	신동읍	방제리	443-82	전	794	4,400	4,300	상향	기 각	4,300	
20	신동읍	방제리	443-83	전	1,489	4,400	4,300	상향	기 각	4,300	
21	신동읍	방제리	443-85	전	516	4,400	4,300	상향	상향조정	4,920	

(단위 : 원/m²)

심의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전년지가	결정지가	이의 신청 요지	조정내용 (검증내용)	조정 결정·고시 가격	비 고
	법정동	법정리	지번								
22	신동읍	방제리	443-127	전	12,879	4,400	4,300	상향	기 각	4,300	
23	신동읍	방제리	443-173	전	816	4,400	4,300	상향	기 각	4,300	
24	신동읍	가사리	389	전	1,996	8,640	8,550	하향	기 각	8,550	
25	신동읍	가사리	390	전	1,590	8,640	8,550	하향	기 각	8,550	
26	신동읍	가사리	397	전	4,000	8,300	8,300	하향	기 각	8,300	
27	남 면	문곡리	179	임	2,354	631	631	하향	하향조정	415	
28	북평면	문곡리	28	전	4,598	1,600	522	하향	기 각	522	
29	북평면	문곡리	30	대	460	6,650	8,310	하향	하향조정	807	
30	임계면	송계리	969	전	2,805	11,200	10,500	상향	상향조정	11,900	
31	임계면	송계리	970	전	2,473	12,700	11,900	상향	기 각	11,900	
32	임계면	송계리	970-4	전	185	3,630	3,460	상향	기 각	3,460	
33	임계면	낙천리	산44	임	29,752	191	191	상향	기 각	191	
34	임계면	반천리	1-1	전	13,169	7,340	7,340	하향	하향조정	4,590	
35	임계면	반천리	1-3	전	11,191	6,960	6,960	하향	하향조정	4,590	
36	임계면	반천리	1-4	대	374	11,600	11,600	하향	하향조정	5,750	
37	임계면	반천리	1-5	답	551	6,810	6,960	하향	하향조정	501	
38	임계면	반천리	1-6	전	1,214	6,960	6,960	하향	하향조정	501	
39	임계면	반천리	4	전	2,876	7,340	7,340	하향	하향조정	4,590	
40	임계면	반천리	5	대	245	11,800	11,800	하향	하향조정	5,750	
41	임계면	반천리	6	전	3,068	6,960	6,960	하향	하향조정	4,590	
42	임계면	반천리	7	전	892	6,960	6,960	하향	하향조정	4,590	
43	임계면	반천리	8	전	879	6,960	6,960	하향	하향조정	4,590	

정선군공고 제2009-488호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 하오니 당해분묘의 설치자나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의 절차에 의거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분묘수	비 고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872	답	3	

2. 개장사유 : 예미농공단지조성공사 부지 내 무연분묘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협의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이전장소

-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47번지(정선군 하늘터)
- 화장후 납골당 안치

5. 공고기간 : 신문공고 게재일로부터 3개월

6. 신 고 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정선군청 산업경제과(☎ 033-560-2356)

7.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09. 07. 15.

위 공고인 : 정 선 군 수

일련번호	분묘의 소재지	분묘의 기수	용도구분	비고
계	1필지	3기		
1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872	3기	묘지	

정선군공고 제2009-491호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 07. 14.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2. 제정취지

가. 『평생교육법』 제5조에 의하여 정선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군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함(안 제3조)

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평생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정선군평생교육협의회를 두며, 정선군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내지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8월 2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90)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 560-21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주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정책개발,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진흥)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수가 평생교육을 목적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2. 군수가 설치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3. 군수가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교육

제5조(경비 지원) 군수는 제4조에 규정된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정선군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2.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상호간의 협력증진 도모

3. 평생교육 실시를 위한 유관기관, 단체간의 협력체제 증진
4. 기타 평생교육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군의 업무관련 실과소장과 정선군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협의회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군의 평생교육 업무소관 담당이 된다.

제8조(의장의 직무 등) ①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는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위원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 위원 본인이 그만 둘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등) ①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등) ①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제14조(설치) 군수는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정선군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개발, 연구, 홍보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평생교육 관련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
4.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6.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운영) ①평생학습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운영요원 등)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 평생교육사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관장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자원봉사자)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9조(공동추진 등) 군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수강료 징수 등) ①군수가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학습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군수가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제21조(수료자에 대한 예우) 군수는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사람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공고 제2009-502호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 07. 20.

정 선 군 수

1. 조례명 :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안 및 강원도 권고 사항과, 군계획위원회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허가 입목조사 방법 변경(입목본수도→입목축척) (안 제18조)

-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 임야내 개발행위허가 시 입목조사 결과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여부가 결정되나,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등 보전용도 지역은 입목축척을 적용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지역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등 개발용도 지역은 입목본수도를 적용할 경우 적용방법에 따라, 보전용도 지역에서는 개발이 가능하고, 개발용도 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음에 따라, 입목조사 방법에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법령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개발이 용이 하도록 조례 개정.

나. 개발행위허가시 도로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추어 개선(안 제19조)

- 도시계획조례상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군관리계획 결정여부가 개발행위허가 선행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매번 군관리계획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은 불가능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의 판단 기준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시행령 제44조

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현실성 없는 “군관리계획결정”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법정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를 인정하여 건축행위가 가능 하도록 완화하고자 함.

다. 군계획위원회 운영방안 개선(안 제57조 ~ 제63조의2)

- 부군수가 맡고 있는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위촉대상 확대(안 제57조)
- 군계획위원회 심의안건이 심의 위원과 친족 및 이해관계에 있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위원의 제척·회피 및 해촉 조항 신설(안 제57조의1)
- 군계획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최실적이 없는 분과위원회 통폐합 및 필요 시 업무·분과위원 조정사항 신설(안 제60조)
- 군계획위원회 회의록은 1년이 경과한 후 공정성 및 공익성을 저해 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유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안 제63조의2)

라.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공장 입지 제한규정 폐지(안 별표19)

- 기업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1만제곱미터미만)의 입지 규제를 도시계획조례로 제한하던 규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함에 따라, 동 조항 폐지.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08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96)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건설도시과(전화 560-2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외 부분 중 “영 별표1”을“영 별표1의2”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축적이 군의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량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 각 호외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제19조제1호 중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를 “신청지역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제19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법」 제14조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의 지원 및 마을 등에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포장하여 개설된 현행도로 및 기타 사실상의 현행도로로 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포장된 현행도로
 - 나.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제방도로 및 구거부지
 - 다.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이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제57조제2항 중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를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로 한다.

제57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영 제1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제1항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0조제1항제2호 중 “영제55조제5항, 제18조제1항제2호 단서”를“영 제55조제5항, 이 조례 제18조제1항제2호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을“5인이상 13인이하의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 또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3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회의록의 공개)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별표 19 중 제1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의 규정은 새로운 위원회 구성시부터 적용한다.

정선군공고 제2009-508호

하 천 편 입 토 지 공 고

구 지방1급하천(한강)에 편입된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시 본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07. 23.

정 선 군 수

1. 건 명 : 하천편입토지 공고
2. 대상하천 : 한강 (구 지방1급하천)
3. 대상토지 :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880번지 외73필지
“세부내역 별도첨부”
4.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09.07.23 ~ 2009.08.06(14일간)
5.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정선군청 재난안전관리과 하천관리팀
(033-560-24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천편입토지조서

하천명 (등급)	편 입 토 지					이용상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 고
	위치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편입 당시	청구 당시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의권리의 종류및내용	
한강 (구 지방1급)	신동읍 고성리	880	하천	4,972	4,972	하천	하천	이상용	고성리 778				
한강 (구 지방1급)	신동읍 운치리	1131	하천	2,060	2,060	하천	하천	이산두 성	운치리 1062				
한강 (구 지방1급)	신동읍 운치리	70	전	1,159	1,159	하천	하천	이화춘	운치리 78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굴암리	106- 2	하천	1,663	1,663	하천	하천	김산성 달	굴암리 186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굴암리	91	하천	1,021	1,021	하천	하천	최을만	굴암리 94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굴암리	38	전	532	532	하천	하천	마금숙	애산리 415-24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복실리	산 122- 7	하천	1,165	1,165	하천	하천	최영선	전주시 고사동 2가 294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복실리	774	하천	985	985	하천	하천	안강월 수	복실리 228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북실리	709-1	제방	663	663	제방	제방	김광광 행	봉양리 338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북실리	709	하천	325	325	하천	하천	김광광 행	봉양리 338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애산리	565-3	제방	48	48	제방	제방	곽연구	서울 강남 역 삼동 670-16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애산리	554-5	전	727	727	하천	하천	옥천동 근	애산리 651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애산리	555-6	하천	605	605	하천	하천	엄종자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280-462			지분1/4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봉양리	31-4	제방	106	106	제방	제방	유춘해	애산리 404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봉양리	29	전	704	704	제방	제방	김성녀	봉양리 27				
한강 (구 지방1급)	북평면 문곡리	402	제방	60	60	제방	제방	전태범	문곡리 412-3				
한강 (구 지방1급)	북평면 문곡리	423-1	하천	66	66	하천	하천	전순병	문곡리 391				
한강 (구 지방1급)	북평면 문곡리	산 189-1	임야	5,338	5,338	하천	하천	정완식	봉양리 37-12	임복 녀	봉양리 236-3	가등기	산189에 서 분할 미등기
한강 (구 지방1급)	북평면 남평리	927-4	천	881	881	하천	하천	마종선	남평리 315				분할미 등기
한강 (구 지방1급)	북평면 남평리	927-6	천	1,603	1,603	제방	제방	마종선	남평리 315				분할미 등기
한강 (구 지방1급)	북평면 남평리	923	하천	602	602	하천	하천	김영환	강릉시 포남동 1005-106 진 달래@ 다-206	국	강릉세무 서	압류	
한강 (구 지방1급)									한국자산관리 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가압류		
한강 (구 지방1급)									신용보증기금	강릉지 점	가압류		
한강 (구 지방1급)									기술신용보증 기금	강릉지 점	가압류		
한강 (구 지방1급)									강릉시		압류		
한강 (구 지방1급)	북평면 남평리	산209	임야	7,007	7,007	하천	하천	신현상	봉양리 375-1				
한강 (구 지방1급)	북평면 남평리	907-3	하천	3,951	3,951	하천	하천	곽재인	남평리 180				907-1 에서 분 할 미등 기
한강 (구 지방1급)	신동읍 덕천리	산152	임야	33,223	1,375	하천	하천	이은순	운치리 814				분할대 상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광하리	35-1	하천	899	899	하천	하천	이창수	애산리433-5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광하리	39-2	하천	777	777	하천	하천	손정자	광하리 85-1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광하리	49-1	하천	2,188	2,188	하천	하천	손정자	광하리 85-1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광하리	50-2	하천	446	446	하천	하천	전준탁	광하리 70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광하리	52-2	하천	1,458	1,458	하천	하천	전준탁	광하리 70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광하리	85-5	하천	69	69	하천	하천	전준탁	광하리 70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광하리	64-3	하천	377	377	하천	하천	전영래	광하리 70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광하리	87-5	하천	360	360	하천	하천	김창민	광하리 27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봉양리	771	전	1,633	1,633	하천	하천	최세훈	봉양리 323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봉양리	182-2	임야	509	509	제외 지	제외 지	고석진	제천시 하소동 353 하소주공 아파트2단지 207-108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봉양리	182-1	전	1,712	1,712	제외 지	제외 지	고석진	제천시 하소동 353 하소주공 아파트2단지 207-108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봉양리	168-1	제방	1,031	1,031	제방	제방	김사문	봉양리 190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봉양리	171-1	제방	1,021	1,021	제방	제방	김사문	봉양리 190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봉양리	171-2	전	264	264	제외 지	제외 지	김사문	봉양리 190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봉양리	131-1	전	2,949	2,949	제외 지	제외 지	고종선	봉양리 321-1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봉양리	107-1	전	1,259	1,259	제외 지	제외 지	고아영	봉양리 193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봉양리	107	전	2,463	2,463	제외 지	제외 지	고아영	봉양리 193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봉양리	362-3	임야	119	119	하천	하천	고종규	강남구 개포동 660-2 주공@ 92-405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봉양리	366-1	전	2,873	2,873	제외 지	제외 지	권중직	봉양리 349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봉양리	366-2	임야	330	330	하천	하천	권중직	봉양리 349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봉양리	371-5	제방	2,136	2,136	제외 지	제외 지	최치훈	봉양리 218				등기부 상 대지 2평 등 록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봉양리	371-6	임야	159	159	제외 지	제외 지	전문삼	봉양리 376				등기부 상 도로 29평 등록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봉양리	378-1	하천	254	254	제외 지	제외 지	소유자	미복구				등기부 없음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봉양리	375-7	제방	16	16	제외 지	제외 지	김경호	봉양리 159				등기부 상 전 121평 등록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봉양리	379-2	대	30	30	제외 지	제외 지	권영진	봉양리 340				등기부 상 대 17평 등록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덕송리	산22	임야	17,454	299	하천	하천	전영천	문곡리 391	동원탄 좌개발	사북5리 산147-3	지상권설정	분할대 상

										주식회 사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덕송리	산 24-2	임야	4,472	4,472	하천	하천	최순주	서울 동대문구 용두1동 39-647 산 24에서 분할 미등기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덕송리	469	전	717	717	하천	하천	함종륜	덕송리 426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덕송리	470- 1	전	1,167	1,167	하천	하천	함계천	덕송리 456				등기부 없음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덕송리	485- 1	임야	588	588	하천	하천	전순녀	양양군 강현면 강산리 179			등기부없음	
한강 (구 지방1급)	북평면 나전리	141- 1	하천	1,121	1,121	하천	하천	김재근					등기부 없음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덕송리	산 19-1	임야	7,094	7,094	하천	하천	배미라	양천구 목동 902 목동신시 가지아파트 233-503산19 에서분할 미등 기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덕송리	62-4	전	646	646	전	제방	연성희	봉양리 864				지분 16040/ 19094
한강 (구 지방1급)							지근 식	애산리 241				지분 251/19094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덕송리	62-1 1	전	1,072	1,072	전	제방	연성희	봉양리 864				지분 16040/ 19094
한강 (구 지방1급)							지근 식	애산리 241				지분 251/19094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덕송리	62-5	전	1,085	1,085	전	제방	연성희	봉양리 864				지분 16040/ 19094
한강 (구 지방1급)							지근 식	애산리 241				지분 251/19094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가수리	472	임야	284	284	하천	하천	이대봉	가수리 503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가수리	474	임야	165	165	하천	하천	이대봉	가수리 503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가수리	274- 1	전	942	942	제방	제방	고명주	봉양리 242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가수리	454	전	450	450	하천	하천	김형규	강릉시 교동 1842-3				
한강 (구 지방1급)	북평면 문곡리	산 191- 1	임야	4,320	4,320	하천	하천	김좌식	남양주시 도농 동 2-1 부영 그린타운 203-1401	김좌식 이석중	서울 강동 성내 서울 구로 개봉	근저당권	지분1/2
한강 (구 지방1급)							김두 식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28-5			지분1/2		
한강 (구 지방1급)	신동읍 덕천리	산 83-1	임야	1,474	1,474	하천	하천	백성현	서울 성북구 성북동 3-101	동원탄 좌개발 주식회 사	사북5리 산147-3	지상권	지분1/3
한강 (구 지방1급)							이순 자	용인시 수지읍			지분1/3		

한강 (구 지방1급)							박준영	죽전리 춘천시 석사동 822				지분1/3	
한강 (구 지방1급)	북평면 북평리	857	전	3,051	3,051	하천	하천	전종표	북실리 772 정선북실아파 트 101-404				
한강 (구 지방1 급)	정선읍 용탄리	559	임	1,035	898	임야	하천	안준영	서울 송파 가락동 183-4 혜성 빌리지 에이 -202	김명덕	인제군읍 상동리 256-4	지상권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용탄리	571	임	747	747	임야	하천	조은실	서울 강남 역 삼동 712-3 개나리아파트 34-1007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용탄리	산497	임	5,851	334	임야	하천	이명자	원주시 일산동 184-14			분할대상 지분3/8	
한강 (구 지방1급)							전상 오	원주시 일산동 184-1 4			지분3/8		
한강 (구 지방1급)							전미 나	원주시 일산동 184-1 4			지분2/8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용탄리	569	전	506	506	전	하천	이명자	원주시 일산동 184-14			지분3/8	
한강 (구 지방1급)							전상 오	원주시 일산동 184-1 4			지분3/8		
한강 (구 지방1급)							전미 나	원주시 일산동 184-1 4			지분2/8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용탄리	570	임	575	575	임야	하천	엄광자	봉양리 248-2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용탄리	568	전	1,170	667	전	하천	이영배	용탄리 421				분할대 상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용탄리	669- 5	전	13	13	전	제방	이왕균	용탄리 672				
한강 (구 지방1급)	정선읍 용탄리	669- 4	전	12	12	전	제방	이왕균	용탄리 672				

정선군공고 제2009-510호

765kV 신태백-신가평송전선로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

산업자원부 관보고시 제2007-34호(2007. 3. 13) 및 지식경제부 관보고시 제2008-212호(2008. 12. 24)로 승인된 765kV 신태백-신가평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 확보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용재결 신청서 및 관건서류를 열람 공고합니다.

2009. 7. 24.

정 선 군 수

1. 사업의 명칭 : 765kV 신태백-신가평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2. 사업 시행자 : 한국전력공사(경인건설처)
3. 토지수용내역 및 열람대상자

(단위 : m², 원)

수 용 토 지 내 역						토지소유자		비고
소 재 지	지번	지목	원지적	편입면적	보상금액	성 명	주 소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228	임	21,600	329	542,850	임병준	서울시 강남구 암구정동 369-1	
“	211	임	1,517	687	893,100	권오숙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1426	
“	213	임	14,803	84	109,200			
“	산189	임	23,603	3,592	2,873,600	이재남	강원도 강릉시 안현동 362-2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1246	전	787	109	861,100	문용기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1268	
“	산544	임	4,014	1,066	2,345,200	최희자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576	
“	산442	임	55,239	338	439,400	김우택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10	
						김금자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314-34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1227	전	1,524,	346	1,781,900	안동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396	

4. 공고기간 : 2009. 7. 23 ~ 2009. 8. 6 (15일간)
5. 의견제출 : 2009. 8. 6일까지 정선군 산업경제과로 토지수용에 관한 의견 제출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서울시 중구 남산동 3가 11-10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 용지팀 (02-2096-4334)

정선군공고 제2009-515호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의 사체를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체(유골)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1. 무연고 사망자 인적사항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망일시	사 망(발견)장 소	사망원인	처리 방법
					안 치(매장)장 소		
불상	불상	불상	불상	불 상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약수터에서 함백방향 약5미터 산기슭	불 명 (음독 추정)	화장후 납골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47번지 정선하늘터		
불상	불상	불상	불상	불상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209-23 공가	불명 (화재사 추정)	화장후 납골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47번지 정선하늘터		

2. 사체 발생 상황

- 2009. 5. 10. 14:50경 강원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약수터에서 함백 방향으로 약 5미터 상거한 산기슭에서 발견 음독 추정.
- 2009.5.26. 15:50경 강원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209-23 4/1 공가에서 발견 화재사 추정.

3. 공고기간 : 2009. 7. 24 ~ 2009. 8. 23 (1개월간)

4. 처리방법 : 화장 후 납골(정선군 사북읍 정선하늘터)

5. 연 락 처 : 강원도 정선군 주민생활지원실 생활보장팀

전화번호: (033)560-2313, FAX (033)560-2588

2009. 7. 24.

정 선 군 수

정선군공고 제2009-516호

정선군하늘터 가동중지 알림

정선군하늘터(화장장)의 주차장 조성공사로 인하여 사업의 안정성 도모와 이용객들의 보다 편리한 시설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득이 아래와 같이 가동을 일시 중지합니다.

2009. 07. 24.

정 선 군 수

- 시설명 : 정선군하늘터(화장장)
- 가동중지기간 : 2009. 7. 25 - 2009. 8. 13(20일간)
- 사 유 : 정선군하늘터 주차장 조성공사 추진
- 기타사항 : 타시군 화장시설 현황
 - 춘천시 :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033-261-7314)
 - 원주시 : 원주시 태장동 산150(033-742-3584)
 - 동해시 : 동해시 신흥동 산18(033-522-1451)
 - 태백시 : 태백시 문곡동 산27(033-550-2597)
 - 속초시 : 속초시 노학동 155-8(033-635-7023)

정선군공고 제2009-517호

행 정 예 고

정선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 회로텔레비전)를 설치하여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시설물의 안전 관리 및 운영상태의 감시, 화재예방 등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09. 7. 27.

정 선 군 수

제목 : 정선군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안)

1. 취지

최근 어린이의 교통사고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2배가량 높으며('06년 기준 : 일본163명, 독일136명, 한국 276명), 어린이가 외부위험에 노출되면서 유괴 실종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범죄예방 및 통제수단으로 정선군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를 설치하고자, 행정예고를 통해 보다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교통사고 및 각종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함.

2. 행정예고사항

가.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설치 계획(안)

연번	관리부서 (관리주체)	설치장소	비고
1	건설도시과	정선읍 봉양리(정선초교)	생활방법
2	건설도시과	고한읍 고한리(갈래초교)	생활방법

나. 위치도 및 구성도

1). CCTV 설치대상지(정선초교 후문 진입로 인근)

< 위 치 도 >



2). CCTV 설치대상지(갈래초교 정문 진입로)

< 위 치 도 >



3. 의견제출

가. 공고기간 : 2009년 7월 27일 ~ 2009년 08월 15일

나.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09년 08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 건설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 반대 의견시 그 사유를 기재)

2) 의견제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행정예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우)

－ 전화번호 : (03.)560-2486 FAX) 033-560-2596

라. 위 의견제출 기간까지 제출 의견이 없을 경우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함. 끝.

정선군공고 제2009-51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하였던 재산에 대하여 공매 예고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07. 28

정 선 군 수

1. 제 목 : 지방세 체납자 공매예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9. 07. 28 ~ 2009. 08. 11 (14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구분	성명 (법인)	주 소	체납세목	체납액	송달불능 사 유
공매 예고	대호피앤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3-1 거평타운 310호	취득세외 1건	6,342,740	수취인불명
공매 예고	나무와나무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3-5	취득세외 4건	8,966,440	이사감
공매 예고	이명규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봉정리 473-2(1반)	자동차세외 32건	3,061,640	수취인부재
공매 예고	김용성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35-5 주공사북아파트 206동506호 (6통10반)	자동차세외 32건	22,106,170	이사감

(2009.07.28현재, 단위 : 원)

4.공시송달내용

-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매진행을 위해 압류하였던 재산에 대하여 공매예고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으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 송달합니다.
-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내에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징수(033-560-2292)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선군공고 제2009-5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강제징수를 위하여 재산압류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 07. 28.

정 선 군 수

1. 제 목 :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09. 07 .28 ~ 2009.08.10(14일간)
- 3 .공시송달내용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기간 내에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징수부서(033-560-2292)로 연락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법인)	주 소	체납세목	체납액(원)	압류 물건	송달불능 사 유
권태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078 현대2차 아파트 202동 1201호	재산세(토지) 외 3건	153,890	부동산	수취인불명
신준호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110-8 (4통4반)	주민세(개인균등) 외 9건	778,300	부동산	수취인미거 주
최달영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57-43 (32통5반)	종합토지세외 4건	246,990	부동산	이사감
강성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33-1 논현휴먼시아 508동 1207호 (48통2반)	재산세(토지)외 3건	270,075,120	부동산	폐문부재

끝.

정선군공고 제2009-521호

정선(남면)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 입안·열람공고

정선(남면)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열람 공고한 사항 중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07. 30.

정 선 군 수

1. 공람목적 : 남면 취락지구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2. 정선(남면)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
 - 가. 용도지구 결정(변경) : 주거개발진흥지구 281,222㎡ ⇔ 278,645㎡(감 2,577㎡)
 - 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 (변경)
 - 1) 남면 취락지구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281,222㎡ ⇔ 278,645㎡(감 2,577㎡)
 - 다. 군계획시설결정 결정(안) (신설)
 - 1) 교통시설 : 도로 1개노선 / 470m, 철도 1개소 / 6,278㎡
 - 라.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281,222㎡ ⇔ 278,645㎡(감 2,577㎡)
3. 관련도서 비치 및 열람장소 : 정선군 건설도시과, 남면사무소
4. 공람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2009. 7.30 ~ 2009. 8.12까지)
5.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공람 기간내 정선군 건설도시과 및 남면사무소에 서면 제출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 건설도시과(☎560-2132, 214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공고 제2009-522호

정선(사북)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안) 재열람·공고

정선군공고 제2008-16호(2008.03.21)로 공고한 정선(사북)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계획구역 일부 조정토록 의결되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열람·공고 하오니, 열람·공고한 사항 중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7. 30.

정 선 군 수

1. 공람목적 : 사북읍 직전리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2. 정선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사항
 - 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 641,710㎡ ⇨ 636,670㎡(감 5,040㎡)
 - 나. 직전리 595번지 일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및 상업용지 소규모블럭 제척 A=5,040㎡
 - 다. 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일부 제척에 따른 가구·획지·도로 등 조정
 - 라. 주거용지내 공동주택용지 건폐율 조정 60% ⇨ 20%
 - ※ 위 사항외 변경사항 없음
3. 관련도서 비치 및 열람장소 : 정선군 건설도시과
4. 공람기간 : 신문게제일로부터 14일간(2009. 7. 30 ~ 2009. 8. 12 까지)
5.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공람 기간내 정선군 건설도시과 서면제출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 건설도시과(☎560-2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공고 제2009-52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하였던 재산에 대하여 공매 예고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07. 29

정 선 군 수

1. 제 목 : 지방세 체납자 공매예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9. 07. 29 ~ 2009. 08. 11 (14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구분	성명 (법인)	주 소	체납세목	체납액	송달불능 사 유
공매 예고	김문섭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417-7 (2통7반)	재산세(건축물) 외 5건	4,611,710	폐문부재
공매 예고	나승구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283-15 (8통3반)	취득세(부동산) 외 10건	3,384,580	폐문부재

(2009.07.29현재, 단위 : 원)

4. 공시송달내용

-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매진행을 위해 압류하였던 재산에 대하여 공매예고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으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 송달합니다.
-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내에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징수(033-560-2292)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선군공고 제2009-524호

공 시 송 달

- 성 명 : 최유진외 171인(“별첨”)
- 주소또는거소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4-10(8/8)
- 서류의 명칭 : 지방세 납세고지서
- 서류의 내용 : 재산세 납세고지서(2009년 7월)

위의 서류를 2009년 7월 귀하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거소·사무소가 불분명하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기내 고지가 불가하여 지방세법 제 52조제2항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변경된 납기인 2009년 8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08. 01.

정 선 군 수

2009년 재산세 공시송달 내역서

개인(법인)명	과세물건	본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	세액합계	공고사유
최유진	고한읍 고한리 62-41	214,350	120,040	75,190	42,870	452,45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이인재	고한읍 고한리 91-35	4,240	2,370	-	840	7,450	재산세 고지서 반송
박순덕	고한읍 고한리 16-31	672,080	-	589,800	134,410	1,396,290	재산세 고지서 반송
강정현	고한읍 고한리 44-2	76,880	43,050	17,500	15,370	152,80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이경자	고한읍 고한리 62-236	22,310	12,490	7,720	4,460	46,98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이경자	고한읍 고한리 62-237	25,020	14,010	6,750	5,000	50,78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윤용재	고한읍 고한리 62-258	5,240	2,930	-	1,040	9,21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임은자	고한읍 고한리 127-28[연납]	16,880	24,440	7,220	3,380	51,920	재산세 고지서 반송
민병재	고한읍 고한리 127-35[연납]	5,980	5,990	-	1,190	13,16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이봉문	고한읍 고한리 산 248-2[연납]	5,250	6,890	-	1,050	13,19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이경자	고한읍 고한리 62-236[연납]	6,120	6,140	-	1,220	13,480	재산세 고지서 반송
남도진	고한읍 고한리 127-16[연납]	47,430	48,440	-	9,480	105,35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서영자	고한읍 고한리 274-52[연납]	12,300	13,020	-	2,460	27,780	재산세 고지서 반송
강원산업개발	고한읍 고한리 373-25 1동 1104호[1기분]	30,600	37,000	15,000	6,120	88,72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우미정	고한읍 고한리 50-54[연납][토지]	7,720	10,770	-	1,540	20,03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이종규	고한읍 고한리 62-55[연납][토지]		4,590	-	-	4,590	재산세 고지서 반송
남도진	고한읍 고한리 124-11[1기분][토지]	53,260	51,430	-	10,650	115,340	재산세 고지서 반송
남도진	고한읍 고한리 127-16[연납][토지]	48,490	51,360	-	9,690	109,54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이재영	남면 무릉리 476-2	1,361,420	762,390	1,251,560	272,280	3,647,650	재산세 고지서 반송
박성수	남면 무릉리 530 무릉아파트 101동 103호[연납]	10,200	13,200	-	2,040	25,440	재산세 고지서 반송
김태호	남면 무릉리 530 무릉아파트 104동 101호[연납]	10,200	13,200	-	2,040	25,440	재산세 고지서 반송
김옥남	남면 무릉리 530 무릉아파트 107동 408호[연납]	10,200	13,200	-	2,040	25,440	재산세 고지서 반송
김수자	남면 무릉리 590-1 4동 405호[연납]	9,000	10,740	-	1,800	21,54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최용운	남면 유평리 185[연납]	9,030	-	-	1,810	10,840	재산세 고지서 반송
먼디지나소	남면 무릉리 590-1 3동 405호[연납]	9,000	10,740	-	1,800	21,54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정수원	남면 무릉리 590-1 6동 202호[연납]	9,600	11,570	-	1,920	23,09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안준집	남면 무릉리 776-16[연납]	44,030	54,180	14,670	8,800	121,680	재산세 고지서 반송
김정임	북평면 북평리 269-34[연납]	6,180	7,160	-	1,230	14,57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이재숙	북평면 북평리 465[연납]	15,420	-	4,350	3,080	22,85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이대희	북평면 남평리 865-3[연납][토지]	6,830	-	-	1,360	8,19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신영농조합법인	사북읍 사북리 32	8,880	-	2,950	1,770	13,600	재산세 고지서 반송
보은건설	사북읍 사북리 229-3 보은아파트 5동 102호	27,540	15,420	8,600	5,500	57,060	재산세 고지서 반송
보은건설	사북읍 사북리 229-3 보은아파트 5동 103호	27,540	15,420	8,600	5,500	57,060	재산세 고지서 반송
보은건설	사북읍 사북리 229-3 보은아파트 5동 104호	27,540	15,420	8,600	5,500	57,060	재산세 고지서 반송
보은건설	사북읍 사북리 229-3 보은아파트 5동 105호	27,540	15,420	8,600	5,500	57,060	재산세 고지서 반송
보은건설	사북읍 사북리 229-3 보은아파트 5동 106호	27,540	15,420	8,600	5,500	57,060	재산세 고지서 반송
박미자	사북읍 사북리 239-5	819,080	458,680	730,910	163,810	2,172,48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이상록	사북읍 사북리 313-5	158,190	88,580	48,370	31,630	326,77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정영숙	사북읍 사북리 369-52	141,080	79,000	83,060	28,210	331,350	재산세 고지서 반송
김준열	사북읍 사북리 373-6	238,800	133,730	201,550	47,760	621,84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정옥자	사북읍 사북리 373-12	3,400	-	-	680	4,08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이두선	사북읍 사북리 435-1 1동 100호	7,520	-	-	1,500	9,020	재산세 고지서 반송
김춘옥	사북읍 사북리 237-9	440,560	246,710	183,760	88,110	959,140	재산세 고지서 반송
김용성	사북읍 사북리 317-31	1,229,690	688,620	1,125,100	245,930	3,289,34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정연규	사북읍 사북리 367-5	5,470	3,060	-	1,090	9,620	재산세 고지서 반송
박영자	사북읍 사북리 369-54	147,940	82,850	44,270	29,580	304,640	재산세 고지서 반송
민수남	사북읍 사북리 397-7	13,250	7,420	2,120	2,650	25,44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조문수	사북읍 사북리 402-41	38,120	-	7,240	7,620	52,98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정선도시개발	사북읍 사북리 229-3 보은아파트 2동 302호[연납]	6,600	8,660	-	1,320	16,58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정선도시개발	사북읍 사북리 229-3 보은아파트 4동 401호[연납]	10,200	10,060	-	2,040	22,30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정선도시개발	사북읍 사북리 229-3 보은아파트 5동 202호[연납]	6,600	6,210	-	1,320	14,13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정선도시개발	사북읍 사북리 229-3 보은아파트 5동 303호[연납]	6,600	6,560	-	1,320	14,48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정선도시개발	사북읍 사북리 229-3 보은아파트 5동 305호[연납]	6,600	6,560	-	1,320	14,48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최종옥	사북읍 사북리 312-4[연납]	8,030	9,710	-	1,600	19,34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이상록	사북읍 사북리 313-5[연납]	28,870	38,280	8,300	5,780	81,23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석춘연	사북읍 사북리 344-60[연납]	17,730	22,230	-	3,540	43,50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최병도	사북읍 사북리 344-97[연납]	35,360	48,900	-	7,070	91,33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정영숙	사북읍 사북리 369-52[연납]	15,430	20,810	9,160	3,080	48,48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정옥자	사북읍 사북리 373-12[연납]	4,820	4,820	-	960	10,60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이기관	사북읍 사북리 389-24[연납]	10,210	10,210	-	2,040	22,46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최시규	사북읍 사북리 435-1 2동 406호[연납]	10,800	-	-	2,160	12,960	재산세 고지서 반송
고재인	사북읍 사북리 435-1 5동 201호[연납]	12,600	-	-	2,520	15,12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최상경	사북읍 사북리 435-5 205 동 201호[연납]	10,800	-	-	2,160	12,960	재산세 고지서 반송
박원서	사북읍 사북리 435-5 205 동 401호[연납]	10,800	-	-	2,160	12,96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전승우	사북읍 사북리 435-5 205 동 407호[연납]	10,800	-	-	2,160	12,960	재산세 고지서 반송
권순옥	사북읍 사북리 435-5 205 동 507호[연납]	10,800	-	-	2,160	12,96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전순희	사북읍 사북리 435-5 206 동 509호[연납]	10,800	-	-	2,160	12,960	재산세 고지서 반송
나무와나무	사북읍 사북리 219-32[연납]	9,220	-	-	1,840	11,060	재산세 고지서 반송
나무와나무	사북읍 사북리 219-32[연납]	9,220	-	-	1,840	11,060	재산세 고지서 반송
나무와나무	사북읍 사북리 219-32[연납]	9,220	-	-	1,840	11,060	재산세 고지서 반송
나무와나무	사북읍 사북리 219-32[연납]	9,220	-	-	1,840	11,060	재산세 고지서 반송
나무와나무	사북읍 사북리 219-34[연납]	11,620	-	-	2,320	13,940	재산세 고지서 반송
나무와나무	사북읍 사북리 219-34[연납]	11,620	-	-	2,320	13,940	재산세 고지서 반송
나무와나무	사북읍 사북리 219-34[연납]	11,620	-	-	2,320	13,940	재산세 고지서 반송
나무와나무	사북읍 사북리 219-34[연납]	11,620	-	-	2,320	13,940	재산세 고지서 반송
나무와나무	사북읍 사북리 219-34[연납]	11,620	-	-	2,320	13,940	재산세 고지서 반송
나무와나무	사북읍 사북리 219-39[1 기분]	42,490	48,210	26,560	8,490	125,75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전창수	사북읍 사북리 229-3 보은 아파트 1동 401호[연납]	22,350	28,840	-	4,470	55,66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전창수	사북읍 사북리 229-3 보은 아파트 4동 502호[연납]	18,000	18,560	-	3,600	40,160	재산세 고지서 반송
김윤순	사북읍 사북리 282 가동 306호[연납]	11,400	12,750	-	2,280	26,43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최숙자	사북읍 사북리 294-3 202 동 1202호[연납]	32,350	32,350	10,250	6,470	81,42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장기봉	사북읍 사북리 294-3 204 동 204호[연납]	44,400	44,660	12,820	8,880	110,760	재산세 고지서 반송
박원서	사북읍 사북리 294-3 204 동 901호[연납]	45,570	45,570	12,770	9,110	113,02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천순임	사북읍 사북리 302 101동 1408호[연납]	20,960	20,960	9,550	4,190	55,66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전금옥	사북읍 사북리 302 101동 509호[연납]	20,490	20,490	8,380	4,090	53,45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이학군	사북읍 사북리 302 101동 101호[연납]	20,040	20,040	9,550	4,000	53,630	재산세 고지서 반송
김진희	사북읍 사북리 302 101동 1006호[연납]	0,960	20,960	8,380	4,190	54,490	재산세 고지서 반송
김옥순	사북읍 사북리 302 103동 703호[연납]	20,490	20,490	9,540	4,090	54,610	재산세 고지서 반송

김경애	사북읍 사북리 302 103동 905호[연납]	10,240	10,240	4,190	2,040	26,710	재산세 고지서 반송
박은숙	사북읍 사북리 302 104동 204호[연납]	20,040	20,040	9,550	4,000	53,63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서명순	사북읍 사북리 302 104동 1302호[연납]	20,960	20,960	9,550	4,190	55,66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정연화	사북읍 사북리 302 104동 101호[연납]	19,580	19,580	8,410	3,910	51,48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이학군	사북읍 사북리 335[연납]	5,770	5,930	-	1,150	12,85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정옥자	사북읍 사북리 366-105 [연납]	11,820	15,510	-	2,360	29,690	재산세 고지서 반송
김은희	사북읍 사북리 435-5 201 동 107호[연납]	10,800	-	-	2,160	12,960	재산세 고지서 반송
문철자	사북읍 사북리 462-4[연납]	27,930	-	10,300	5,580	43,810	재산세 고지서 반송
박순녀	사북읍 사북리 317-214 [연납][토지]	18,590	22,570	-	3,710	44,87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영농조합법인 농촌	신동읍 예미리 122-8	40,570	45,440	18,860	8,110	112,98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안기남	신동읍 예미리 122-10	42,660	23,890	8,330	8,530	83,41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이은순	신동읍 예미리 672-6	8,470	4,740	-	1,690	14,900	재산세 고지서 반송
황도수산	신동읍 조동리 303-11	75,770	84,870	45,710	15,150	221,500	재산세 고지서 반송
황도수산	신동읍 조동리 308	146,850	82,230	87,680	29,370	346,13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이상수	신동읍 조동리 513	346,520	194,050	277,260	69,300	887,13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이상수	신동읍 조동리 513-1	38,970	21,820	7,450	7,790	76,03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이병열	신동읍 고성리 604-2	18,270	-	-	3,650	21,92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이상용	신동읍 덕천리 317-9	21,040	-	-	4,200	25,24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이은순	신동읍 예미리 668-6	268,000	150,080	100,940	53,600	572,620	재산세 고지서 반송
김정순	신동읍 조동리 4-5	4,790	2,680	-	950	8,42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이태순	신동읍 조동리 6-89	4,440	2,480	-	880	7,80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안기남	신동읍 예미리 122-10[연납]	18,900	22,490	5,850	3,780	51,02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최춘산	신동읍 조동리 1-30[연납]		-	5,950	-	5,950	재산세 고지서 반송
김한범	신동읍 조동리 144 2동 507호[연납]	5,700	7,290	-	1,140	14,130	재산세 고지서 반송
김운득	신동읍 조동리 238 1동 201호[연납]	5,640	10,740	5,570	1,120	23,070	재산세 고지서 반송
김운득	신동읍 조동리 238 1동 202호[연납]	5,640	10,740	5,630	1,120	23,130	재산세 고지서 반송
김운득	신동읍 조동리 238 1동 203호[연납]	5,640	10,740	5,630	1,120	23,130	재산세 고지서 반송
김한범	신동읍 조동리 303-1 장 미주택 나동 202호[연납]	6,180	8,240	-	1,230	15,65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서석달	신동읍 덕천리 73[연납] [토지]	5,470	-	-	1,090	6,56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임이랑	신동읍 운치리 1150-1[연 납][토지]	5,140	-	-	1,020	6,16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전옥출	여량면 여량리 269-30	60,990	34,150	12,730	12,190	120,060	재산세 고지서 반송
강일관광여행사	여량면 유천리 435-5	13,490	-	2,150	2,690	18,33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여량농협합자회사	여량면 유천리 474-6	9,700	-	-	1,940	11,64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전옥출	여량면 여량리 269-30[연 납]	16,340	23,350	5,620	3,260	48,570	재산세 고지서 반송
강미옥	여량면 여량리 173-1[연 납]	20,460	18,060	-	4,090	42,61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전옥출	여량면 여량리 149-28[연 납][토지]	4,220	4,220	-	840	9,28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전옥출	여량면 여량리 167-4[연 납][토지]		4,050	-	-	4,050	재산세 고지서 반송
홍규식	여량면 여량리 253-1[연 납][토지]	9,690	12,710	-	1,930	24,33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전옥출	여량면 여량리 149-101 [연납][토지]	4,850	6,800	-	970	12,62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전옥출	여량면 여량리 149-102 [연납][토지]	5,170	7,230	-	1,030	13,430	재산세 고지서 반송
김복경	임계면 가목리 106-81	59,050	-	12,270	11,810	83,130	재산세 고지서 반송
대영영농조합	임계면 임계리 394-3	18,010	-	6,740	3,600	28,350	재산세 고지서 반송
김희기	임계면 임계리 산 542	3,390	-	-	670	4,060	재산세 고지서 반송
김계순	임계면 송계리 728	5,510	3,080	-	1,100	9,69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전미라	임계면 봉산리 140	5,950	-	-	1,190	7,140	재산세 고지서 반송
함수복	임계면 용산리 221-1	5,950	-	-	1,190	7,140	재산세 고지서 반송
김복경	임계면 가목리 106-81[1 기분]	36,290	-	13,150	7,250	56,690	재산세 고지서 반송
흥해배씨옥과 공파	임계면 도전리 759-2[연납]	9,420	-	-	1,880	11,30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정희중	임계면 송계리 749-39[연납]	7,020	9,050	-	1,400	17,47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유병두	임계면 봉산리 238-10 나 동 503호[연납]	10,770	14,330	4,270	2,160	31,53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진아건설	임계면 봉산리 240-19 2 동 301호[연납]	8,400	9,920	-	1,680	20,000	재산세 고지서 반송
고용준	임계면 골지리 546[연납]	4,960	-	-	990	5,95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진달래	임계면 송계리 579-22[연납]	11,910	16,810	-	2,380	31,10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정희중	임계면 송계리 749-39[연 납][토지]	7,010	9,080	-	1,400	17,490	재산세 고지서 반송
김광호	임계면 송계리 764-2[1기 분][토지]	32,890	39,440	-	6,570	78,90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임호근	정선읍 봉양리 340-18	74,330	41,620	33,370	14,860	164,18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정선읍번영회	정선읍 봉양리 356-8	156,070	87,400	47,530	31,210	322,210	재산세 고지서 반송
강원남부생약 농업협동조합	정선읍 덕송리 476-3		-	7,930	-	7,930	재산세 고지서 반송

강원남부생약 농업협동조합	정선읍 덕송리 476-7		-	3,540	-	3,54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신월2리영농 회	정선읍 신월리 229-3	6,350	-	-	1,270	7,62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이정규	정선읍 봉양리 344-24	6,650	3,720	-	1,330	11,70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전우권	정선읍 여탄리 460	4,090	-	-	810	4,900	재산세 고지서 반송
권금옥	정선읍 봉양리 36-19[연납]	5,970	6,390	-	1,190	13,55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이종식	정선읍 봉양리 36-26[연납]	10,460	14,250	-	2,080	26,79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신춘자	정선읍 봉양리 134-12[연납]	14,400	19,620	-	2,880	36,900	재산세 고지서 반송
남진해	정선읍 봉양리 207-1[연납]	36,290	38,620	-	7,250	82,16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임호근	정선읍 봉양리 340-18[연납]	12,070	12,070	4,810	2,410	31,360	재산세 고지서 반송
김종운	정선읍 북실리 616-12 용 담연립 1동 101호[연납]	6,000	6,940	-	1,200	14,14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이정규	정선읍 북실리 628 아리랑 아파트 1동 101호[연납]	7,800	9,560	-	1,560	18,92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서명조	정선읍 북실리 745-1 현대 아파트 1동 303호[연납]	38,400	41,920	10,930	7,680	98,93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손창덕	정선읍 북실리 746-6 미 소빌 1동 409호[연납]	18,000	21,870	6,790	3,600	50,26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최정호	정선읍 북실리 746-6 미 소빌 1동 1213호[연납]	12,600	14,580	3,580	2,520	33,28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송재영	정선읍 북실리 772-2 103 동 205호[연납]	9,600	10,930	-	1,920	22,45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전병식	정선읍 북실리 772-2 103 동 306호[연납]	10,200	11,840	-	2,040	24,080	재산세 고지서 반송
김무영	정선읍 북실리 772-2 104 동 304호[연납]	10,200	11,840	-	2,040	24,08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정종덕	정선읍 북실리 772-2 105 동 102호[연납]	9,000	10,470	-	1,800	21,27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유창해	정선읍 애산리 432-18[연납]	23,490	31,290	4,800	4,690	64,270	재산세 고지서 반송
김창봉	정선읍 굴암리 77[연납]	27,930	-	-	5,580	33,510	재산세 고지서 반송
민경자	정선읍 덕우리 293[연납]	35,030	-	9,420	7,000	51,45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유호성	정선읍 애산리 722[연 납][토지]	8,590	8,370	-	1,710	18,67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유말순	화암면 화암리 548-6	736,450	-	535,110	147,290	1,418,85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지역산녹색산 채가	화암면 물운리 263-1	36,380	-	6,830	7,270	50,480	재산세 고지서 반송
민병오	화암면 백전리 367[연납]	4,140	-	-	820	4,960	재산세 고지서 반송
민병오	화암면 백전리 373[연납]	8,280	-	-	1,650	9,930	재산세 고지서 반송
이재복	화암면 석곡리 790[연 납][토지]	5,620	-	-	1,120	6,740	재산세 고지서 반송